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아동가족과)
- 제출일자: 2025. 5. 27.(화)
- 회부일자: 2025. 5. 27.(화)
- 검토기간: 2025. 6. 5.(목) ~ 2025. 6. 12.(목)

2.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운영 (원장)	위탁기간
모아엘가	상화북로16(상인동,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185㎡ (지상1)	33/30	이현진	2020. 9. 1. ~ 2025. 8. 31.(5년)
다 슝	상화로370(상인동,장미 아파트)	200㎡ (지상2)	41/28	한정희	2020. 11. 1. ~ 2025. 10. 31.(5년)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운영 (원장)	위탁기간
더샵 센트럴	당산로17(본리동, 더샵달서센트럴아파트)	304m ² (지상1)	48/42	박경선	2020. 11. 1. ~ 2025. 10. 31.(5년)
미리샘	한실로134(도원동, 미리샘마을)	178m ² (지상1)	41/13	김주희	2020. 11. 1. ~ 2025. 10. 31.(5년)
사랑별	월성로132(월성동, 이편한세상월배)	184m ² (지상1)	42/38	사회복지법 인공전 (김현미)	2020. 11. 1. ~ 2025. 10. 31.(5년)
아 람	한실로30(도원동, 아람마을)	164m ² (지상1)	38/17	김경숙	2020. 11. 1. ~ 2025. 10. 31.(5년)
캐 슬	장산남로33(용산동, 용산롯데캐슬그랜드)	181m ² (지상1)	42/41	최경순	2020. 11. 1. ~ 2025. 10. 31.(5년)
하늘별	용산로160(용산동, 우방죽전타운)	161m ² (지상1)	35/23	정재영	2020. 11. 1. ~ 2025. 10. 31.(5년)
한 별	이곡공원로33(이곡동, 성서동서화성타운)	200m ² (지상1)	43/22	정태욱	2020. 11. 1. ~ 2025. 10. 31.(5년)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계약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8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만료시기 2025. 8월 ~ 10월)이 다가옴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모아엘가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더샵센트럴어린이집, 미리샘어린이집, 사랑별어린이집, 아람어린이집, 캐슬어린이집, 하늘별어린이집, 한별어린이집)에 대하여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9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결과 각 영역별 우수로 평가완료 인증되었으며,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역기관연계프로그램과 다양한 학부모 참여 활동을 통해 학부모·아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배양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심사기준에 따라 2025년 7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고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사료됨.
- 다만, 향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위탁 심사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보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④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